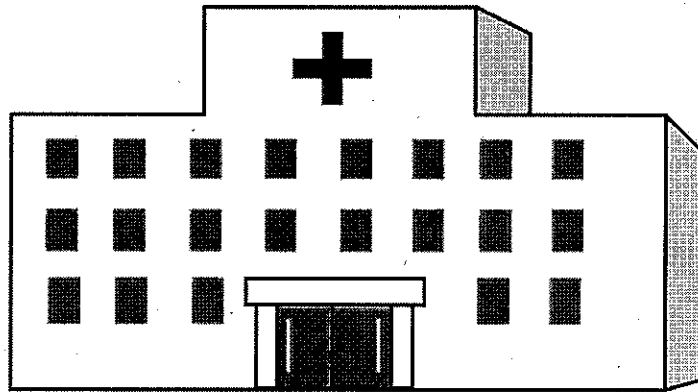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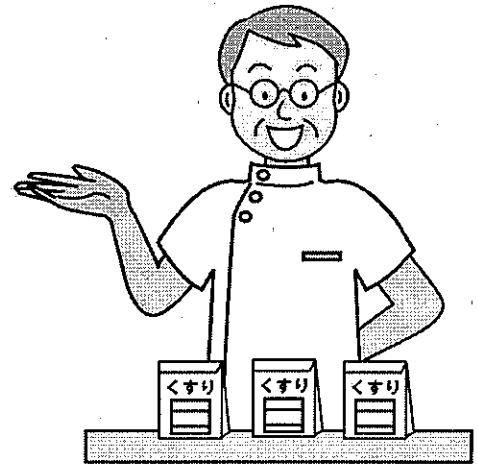


의료기관 진찰 핸드북



야마나시 현
< 국제과 >

주의 : 일본의 의료기관이나 행정기관에는, 보통 통역이 없기 때문에,
이 기관에 문의나 상담을 할 경우는,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분을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기관	4
1-1	의료기관의 기초지식	4
	(1) 의료기관의 종류	
	(2) 진료과목	
	(3) 선착순 제도와 예약제	
1-2	진찰을 받기 위해서는	5
	(1) 진찰에 필요한 것	
	(2) 진찰시간	
	(3) 의료기관 찾기	
1-3	진찰의 흐름	7
	(1) 초진의 일반적인 순서	
	(2) 각국어에 의한 의료 문진표	
1-4	입원의 흐름	9
	(1) 병실	
	(2) 일반적인 입원의 순서	
1-5	주의사항	10
	(1) 의원, 병원 등에서의 주의사항	
	(2) 언어가 불안한 경우	
	(3) 일본의 의료제도를 모르는 경우	
2	약국	10
2-1	약국(藥局)과 약가게(藥店)의 차이	10
2-2	약의 구입	11
2-3	약의 사용방법	11
3	구급	11
3-1	급한 병이나 상처에 의해 구급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	11
3-2	야간, 휴일의 경우	12
	(1) 이용방법에 대해서	
	(2) 이용상의 주의점	
	(3) 구급차의 이용에 대해서	
3-3	교통사고를 당하면	14
	(1) 교통사고의 포인트	
	(2) 손해배상과 산정방법	
	① 지바이세키 보험(自賠償保險=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② 임의보험	

- ③ 변호사회의 산출방법
- (3) 과실배분에 대해서
- (4) 가해자가 됐을 때

4	공적의료보험	16
4-1	의료비와 공적의료보험	16
	(1) 의료비와 공적의료보험	
	(2) 보험대상 외의 치료	
	(3) 민간의 의료보험	
4-2	건강보험	19
	(1) 가입대상자	
	(2) 가입수속	
	(3) 보험종 (건강보험 피보험자증)	
	(4) 의료기관에 대한 부담액	
	(5) 보험료	
	(6) 건강보험의 급부종류의 내용	
4-3	국민건강보험	20
	(1) 가입대상	
	(2) 가입수속	
	(3) 보험종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	
	(4) 의료기관에 대한 부담액	
	(5) 보험료	
	(6) 국민건강보험의 급부종류의 내용	
	(7) 이럴 때는 신고를	
4-4	외국인유학생 의료비 보조제도	23
5	고액의료비	24
6	노동자 재해보상보험 (노재보험)	25
6-1	「의료보상급부」 (근무 중의 상처·병의 치료를 할 경우)	25
6-2	「휴업보상급부」 (근무 중의 상처·병으로 일할 수 없을 경우)	25
6-3	후유증이 남는 경우	26
7	연금	26
7-1	가입하기 위해서는	26
7-2	보험료	26

7-3 납부가 어려운 경우 26
7-4 연금의 지급 27
7-5 귀국하는 경우 27

8 후생연금보험 27

1 의료기관

병이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당신의 경우, 어떤 의료기관에서, 어떤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까, 일본의 의료기관과 그 진료태세, 규칙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1 의료기관의 기초지식

(1) 의료기관의 기초지식

일본의 의료기관은, 입원이나 검사설비가 갖춰진 병원과,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진료소로 나뉘어집니다.

진료소는 입원설비가 20 석 미만의 의료기관으로, 입원설비가 없는 곳이 많고, 가벼운 증상일 때 진찰을 받습니다.

병원에는 입원설비와 검사기재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국·현립의 병원 등에서는, 전문 별로 고도한 의료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200석 이상의 병원에서는 진료소 등의 소개장이 없으면 비용이 더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진료소에서 진찰받고, 필요하면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병이 났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가까운 곳에 어떤 의료기관이 있는지 알아둡시다.

~~~~~  
야마나시 의료넷트 <http://www.yamanashi-iryo.net/>  
~~~~~

(2) 진료과목

진료소, 병원은, 병이나 상처에 의해 진찰과목이 정해집니다. 대부분의 진료과를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과, 일부의 진찰과목을 전문으로 하는 진료소, 병원이 있으므로, 진찰받을 때는, 병이나 상처에 맞는 곳을 고릅니다. 주요 진찰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과 등으로, 커다란 병원이 되면 될 수록, 보다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찰과목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하에 진료과목의 실제와, 어떤 병을 진찰받을 수 있는 지, 그 일부 예를 소개합니다.

내과	약을 사용해서 낫게 하는 과. 감기를 비롯하여 일반 병을 진찰받음. 당신이 어떤 병인지 모르는 경우, 우선적으로 진찰받으면 좋을 것입니다.
외과	외상에 관한 치료를 행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술을 요하는 치료를 행합니다.
소아과	아이를 대상으로, 일반 병을 진찰받습니다.
정형외과	골절이나 삐었을 때, 요통 등 뼈·관절·근육에 관한 치료를 행합니다.
안과	눈의 일반 병을 진찰받는 외에, 시력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충치치료 등, 이에 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방사선과, 정신과, 신경내과, 뇌외과, 호흡기과(흉부외과), 순화기내과(심장외과), 소화기내과(소화기내과), 항문과 등이 있습니다.

큰 병원에서, 어느 과에 가야 할 지 모를 때는, 접수처에서 증상을 얘기하여 문의해 주십시오.

(3) 선착순제와 예약제

일본의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선착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에서는 예약제가 일반적이고, 의료기관에서도 예약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1-2 진찰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에서는 아쉽게도 다국적언어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갑시다.

종교상의 이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치료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 경우와, 알레르기체질 등의 경우에는, 미리 접수처나 간호사 등에게 전달합니다.

(1) 진찰에 필요한 것

의료기관에는 「보험증」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하면, 의료를 일부만 자기부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증」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 경우, 또는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경우는, 의료비가 전액 자기부담이 되어, 상당한 고액청구가 됩니다.

그 밖에, 외국인등록증명서나 여권 등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도 가지고 가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으면, 그것도 지참합니다.

「보험증」에 대해서는 4 「공공의료보험」 4-2 건강보험, 4-3 국민건강보험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 진찰기관

의료기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 평일의 오전 중과 오후가 많고, 토요일은 오전 만, 일요·경축일은 휴진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미리, 전화로 확인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시간 외의 진료에 대해서는, 3-2 「야간, 휴일의 경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 의료기관 찾기

의료기관은 인터넷이나 전화번호부 등에서 찾습니다. 또한, 근처의 주민에게 물어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야마나시 넷트웍 <http://www.yamanashi-iryo.net/>  
 ~~~~~

긴급정보 가이드북 <http://www.yia.or.jp/emergency/index.html>
 ~~~~~

이하와 같은 외국어대응 전화상담 등도 있습니다.

~~~~~ AMDA 国際医療情報センター ~~~~~

언어가 통하는 의료기관의 소개나 의료복지제도의 안내를 다국적언어로 행하고 있습니다.

●도쿄센터 전화번호(상담): 03-5285-8088

| 언어 | 요일 | 시간 |
|-----------------------------|---------------|-------------|
| 영어, 타이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 월요일부터 금요일 | 9:00~17:00 |
| 포르투갈어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 9:00~17:00 |
| 필리핀어 | 수요일 | 13:00~17:00 |

●칸사이센터 전화번호: 06-4395-0555

| 언어 | 요일 | 시간 |
|----------|-----------|-------------|
| 영어, 스페인어 | 월요일부터 금요일 | 9:00~17:00 |
| 중국어 | 월요일부터 목요일 | 11:00~14:00 |
| 포르투갈어 | 월요일 | 10:30~14:30 |



1-3 진찰의 흐름

(1) 초진의 일반적인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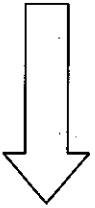
우선 병이나 상처에 대응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그 의료기관의 접수에 보험증을 제출합니다. 보험증을 제출하면, 대합실에서 기다리셨다가 (대부분의 경우, 진찰 신청서나 문진표 등에 필요사항 등을 기입하게 됩니다, 진찰, 회계, 약의 수령의 순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병, 상처의 치료를 받고 싶다



그 병, 상처에 대응이 가능한 진료소, 병원을 찾습니다.

② 진료소, 병원에 간다



접수처에 「초진입니다」라고 말하며 보험증을 제출합니다. 이 때, 대부분의 경우, 진찰신청서와 문진표 등에 필요사항 등을 기입하게 됩니다.

문진표란, 현재의 병의 증상이나 병력 (기존 병력), 알레르기 유무 등을 기입하는 용지를 말합니다. 기입이 끝나면, 그 용지를 접수처에 내고, 대합실에서 기다립니다.

③ 진찰



이름을 불러우면, 진찰실에 들어가, 진찰을 받습니다. 필요에 따른, 검사나 처치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다음 번의 예약을 합니다.

④ 회계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진찰이 끝난 다음, 간호사로부터 회계서류를 건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그 회계서류를 회계창구에 냅니다. 또한, 이 때에 건네받은 영수증은 잘 보관해 둡시다. 1개월의 의료비가 고액(피보험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릅니다)인 경우에는, 의료비의 일부가 지급되어집니다.

⑤ 약의 수령

회계할 때 건네받는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습니다. 약 값은 여기에서 별도로 지불합니다. (이것을 「원외 약국(院外藥局)」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는, 병원 내에 약국창구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계 속에 약 값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내 약국(院內藥局)」이라고 합니다.

*재진할 때는, 진찰권을 가지고 진찰과(受診科)에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처에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후의 순서는 초진과 같습니다.

(2) 다국적 언어 의료문진표

카나가와 국제교류재단에서 다국적언어 의료문진표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AMDA 국제의료정보센터에서는 다국적 언어 진찰신청서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각각,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 할 수가 있으며, 어드레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나가와 국제교류재단 ~~~~~

<http://www.k-i-a.or.jp/medical/index.html>

과목별, 언어별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은 10 과목, 14 언어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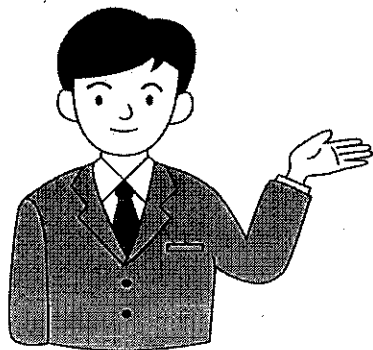
과목) 안과 문진표, 외과 문진표, 산부인과 문진표, 치과 문진표, 이비인후과 문진표
소아과 문진표, 정형외과 문진표, 내과 문진표, 뇌신경외과 문진표, 피부과
문진표,

언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감보디아어, 스페인어, 타이어, 필리핀어,
중국(폐킹어), 한국어, 베트남어, 페르살어, 포르투갈어,
라오스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 AMDA 국제의료정보센터 ~~~~~

<http://homepage3.nifty.com/amdact/PDF/jap/pdf-J-master.html>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의 진찰 신청서가 있습니다.



1-4 입원의 순서

입원할 지 안 할 지는 기간을 포함해서, 증상을 보고, 의사가 정합니다. 의사로부터 입원의 지시를 받으면 통상 병원의 「입원상담창구」에서 담당자와 입원하는 기일을 정하거나, 입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받기도 합니다.

(1) 병원

개인실, 2인실, 4인실, 6인실 등의 병실이 있습니다. 의료상의 이유로 병원측이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인 또는 2인실을 희망하면 별도의 특별요금이 듭니다. 특별요금은 병원에 따라 다르며, 1일 2,000엔 전후부터, 만엔 이상까지 가격차가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입원의 순서

일반적으로는, 입원일시, 입원에 필요한 준비물, 보험증,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건네받고, 입원수속을 한 다음, 입원합니다. 의사가 증상을 보고, 퇴원을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원수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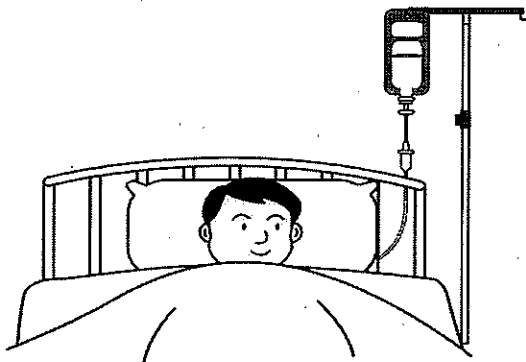
입원신청서에 기입하고, 필요한 것(건강보험증, 진찰권, 보험증 등)을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사 등에게 식사습관, 종교적인 사항 등을 얘기해 둡니다. 같은 병실의 사람에게도 알려둘 필요가 있다면, 간호사 등에게 부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속옷이나 세면구 등의 개인용품 등은 주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입원 중

면회시간 등을 지키고, 다른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어린이 입원병동에서의 면회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의 경우에는 의사로부터 설명이 있고, 그 후, 의사확인을 위해, 수술승낙서에 사인을 요구받게 됩니다. 모르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서슴치 말고 문의하십시오.

③ 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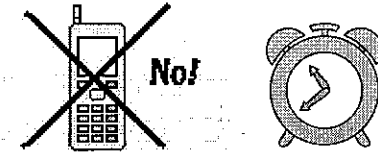
퇴원비용을 지불하고, 퇴원합니다.



1-5 주의사항

(1) 진료소, 병원 등에서의 주의사항

진료소, 병원내에서는 휴대전화나 PHS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예약시간이나 면회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진찰결과나 약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때까지, 의사에게 설명을 희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언어에 불안이 있는 경우

언어소통이 불안한 때는, 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동행합니다.

(3) 일본의 의료제도를 모르는 경우

일본의 의료제도는, 자기자신이 청구하지 않으면, 수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나 체계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처에서 묻거나, 소셜워커가 있는 병원에서는 소셜워커에게 상담합니다. 소셜워커에의 상담은 무료입니다. 비밀도 엄수해 줍니다.

2 약국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약을 복용합니다. 약에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복용에는 충분히 주의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에서는 처방약, 일반약, 사용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2-1 약국(藥局)과 약가게(藥店)의 차이

일본의 약국에는 약국과 약가게의 2 종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약제사가 있어서, 처방전에 따른 조제가 되는지 안되는지입니다.

| | |
|-----|--|
| 약국 | 일반약의 판매와 함께, 처방전에 의한 조제가 가능합니다. 약국의 이름에도 「〇〇약국」이라고하는 약국의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
| 약가게 | 일반약의 판매는 하지만, 처방전에 의해 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가게이름에는 「△△토락크(drug)」나 「◇◇약가게」 등의 이름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



2-2 약 사기

약국, 약가게에서는, 몸의 상태가 나쁘지만, 병원에 갈 정도까지 생각되지는 않을 때에, 두통약이나 감기약, 위장약 등의 일반약을 살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의료보험의 적용이 안 되므로, 전액 자기부담이 됩니다.

한편, 의사로부터 받은 처방전으로 조제해 받을 때는, 약국에 갑니다. 이 경우,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그 대상이 되므로, 비용은 일부만으로 가능합니다. 단, 처방전의 유효기한은 특별한 기재가 없는 경우, 교부일을 포함해서 4 일간입니다. 유효기간을 지나면, 다시 진찰받아서 처방전을 발행받아야만 합니다. 과거에 처방해 받은 적이 있는 약이라도, 다시 사용(복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서 처방전을 써 받지 않으면 조제해 받을 수 없습니다.

2-3 약의 사용방법

약국, 약가게에서는 약을 마시는 방법이나 사용상의 주의, 부작용 등에 대해서, 약제사 등으로부터 설명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약국, 약가게에 통역은 없으므로,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을 동반하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구입한 약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외국어에 의한 설명은 없으므로, 모를 때는 누군가에게 해석해 받도록 합시다.



3 구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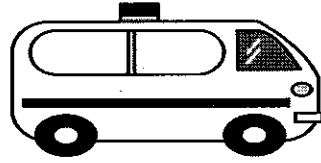
병이나 상처는 갑자기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구급차를 부른다던가,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 등, 만약의 경우의 의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3-1 급한 병이나 상처 등으로 구급차를 필요로 할 때

119번에 통보합니다. 119번에는 가정전화, 공중전화, 휴대전화, PHS 어느 것으로도 걸 수 있습니다. 전화로 119번에 걸면, 소방서에 연결됩니다. 소방서의 직원은 「화재」인가 「구급」인가를 물어오므로, 차분하게 「구급」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급병인이나 상처인이 있는 장소와 알기 쉬운 표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됐나」를 요령있게 간단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급병인·상처인의 인원 수와 그 사람의 연령이나 성별 등도 필요에 따라서 대답합니다.

최후에 자신의 이름과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얘기합니다.

이들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구급차는 무료입니다만, 자기 차나 택시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병이나 상처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2 야간, 휴일의 경우

야마나시현 구급의료정보센터 등에서, 초기구급의료에서부터 3 차구급의료까지의 당번 진료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이용방법

하기의 각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면, 의료기관을 안내해 주므로 반드시 그 의료기관에 전화를 하여, 수용의 승인 등을 확인한 뒤 진찰받으십시오.

*구급차를 필요로 하는 병이나 상처의 경우는, 직접 119번에 연락해 주십시오.

*각 기관에서의 안내의 방법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그 방법에 따라서 이용해 주십시오.

| | |
|--|----------------|
| 야마나시현 구급의료정보센터
(코후시 및 나카코마 동부지구를 제외한 전지역) | 055 (224) 4199 |
| 코후시 의사회 구급의료센터
(코후시 및 나카코마 동부지구) | 055 (226) 3399 |
| 코후지구 소방본부 | 055 (222) 1190 |
| 히가시 야마나시 소방본부 | 0553 (32) 0119 |
| 후에후키시 소방본부 | 055 (261) 0119 |
| 쿄낭 소방본부 | 055 (272) 1919 |
| 미나미알프스시 소방본부 | 055 (283) 0119 |
| 쿄후쿠 소방본부 | 0551 (22) 3311 |
| 후지코코 소방본부 | 0555 (23) 4444 |
| 쨌루시 소방본부 | 0554 (43) 2341 |
| 오츠키시 소방본부 | 0554 (22) 0119 |
| 우에노하라시 소방본부 | 0554 (62) 4111 |

[주의] 나카코마 동부지구의 대상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이시甲斐市 (구 류요쵸竜王町、구 시키시마쵸敷島町の 구역)、쇼와쵸昭和町、주오시中央市

(2) 이용상의 주의점

- ① 전화로는, 우선 환자의 주소, 성명, 증상 등을 말해 주십시오.
- ② 원칙적으로, 환자의 주소지의 구역의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 ③ 진찰받기 전에, 반드시 환자 자신 또는 가족분이, 안내를 받은 의료기관에 전화해서 「지금부터 진찰을 받으러 간다」는 것을 알린 후 나갑시다.
- ④ 진찰 시에는, 반드시 건강보험증을 지참합니다.
- ⑤ 진찰을 희망하는 진찰과목에 따라서는, 의료기관을 안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구급차의 이용에 대해서

구급차란, 급히 몸의 상태가 안 좋아서, 자신이 의료기관에 갈 수 없는 경우나, 교통사고 등으로 상처를 입은 경우에, 당신을 의료기관까지 운반해 주는 것입니다. 구급차는 무료입니다. 구급차를 부를 때는, 119번에 전화를 해 주십시오.(무료입니다.) 녹색 공중전화로부터 119번을 걸 때는, 전화기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대부분의 휴대전화, PHS에서도 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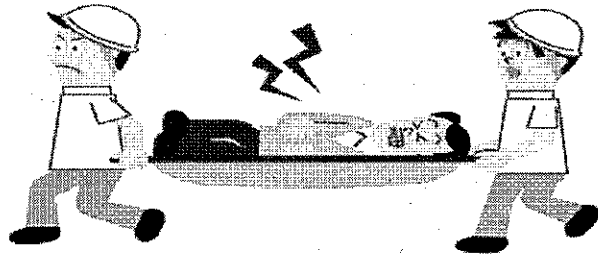
휴대전화나 PHS로 전화를 건 경우에는, 잠시동안 전원을 끄지 말아 주십시오. 소방서로부터 문의를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의 근처에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구급차를 불러 주십시오」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자신이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전화가 연결된 후, 차분하게 다음의 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 구급입니다. 빨리 와 주십시오.
- 일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말하지 못합니다._____어 라면 말할 수 있습니다.
- 이름은_____입니다.
- 지금,_____에 있습니다.
(주소와 목표가 될 만한 것을 말해 주십시오.)
- 상태는,_____
(상처를 입었습니다./아픕니다/교통사고)
- 전화번호는,_____입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면서 당신이 있는 장소까지 금방 옵니다. 구급차가 오면,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서 차분하게 행동해 주십시오. 구급대원이 적절한 의료기관에 데려다 줍니다.

당신이 이미 다니고 있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참고로 그 의료기관명을 쓴 것을 구급대원에게 건네주십시오. 단, 그 의료기관에 반드시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복용 중의 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도 건네주십시오. 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잊지말고 가지고 갑시다.



3-3 교통사고를 당하면

(1) 교통사고의 포인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포인트는, 이하와 같습니다.

- ① 교통사고를 당하면 우선, 가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번호를 확인해 주십시오.
- ② 즉시 경찰 (110번) 에 연락해서, 교통사고의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법률로도 정해져 있어, 후일, 가해자와 보험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신고에 의해서 발행되는 사고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경우, 나중에 후유증이나 내장, 뼈 등에 손상이 판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느정도의 타격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나중의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도, 당사자 끼리가 해결하지 말고 경찰에 연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③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가서, 자신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작성해 받으십시오. 다쳐서 일을 쉬었다고 해도, 자신이 약을 사서 치료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훗 날, 가해자나 보험회사에 피해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의사의 지시를 잘 들은 후, 치료를 받으십시오. 또한, 가해자나 보험회사에 요구해서, 치료비를 가해자나 보험회사가 부담할 것을 약속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약속이 행해지지 않고, 치료비가 피해자의 부담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해 둡시다.
- ④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쳤을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연락해 둡시다. 훗 날, 휴업손해의 청구를

행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작성하는 사고 이전의 3개월 취로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⑤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나, 장기의 치료나 후유증이 예상되는 경우, 배상 등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는, 현의 교통사고 상담소나 시초손의 법률상담 변호사에게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2) 손해배상과 산정방법

교통사고로 사망이나 다쳤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는 크게 나누어서 치료관계비·휴업손해보상·위자료·사망이나 후유장애에 따른 보상(과실이익·위자료)가 있습니다.

1일 중, 오전 8시부터 오후 5 시까지는 휴업손해보상으로 보상되지만, 그 외의 시간에서의 사생활상의 불이익은 위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오른손이 골절되어, 식사를 만들 수 없고, 목욕을 할 수 없다거나, 또, 아픔이 오는 등도 위자료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 다쳐서 오는 여러가지 정신적인 보상은, 위자료로 산정합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도, 지바이세키보험, 임의보험, 변호사회에 따라 다릅니다. 치료를 계속해서도 아픔이나 운동제한 등에 개선이 없는 경우, 그 아픈 정도나 운동제한에 대해서는, 후유장애의 등급으로 판단받습니다. 후유장애의 배상에는, 과실이익(후유장애에 따라서 장래에 잃게 될 분의 보상)과, 후유장애에 따른 위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은, 1) 지바이세키보험 (차의 소유주·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 있는 보험), 2) 임의보험 (차의 소유주의 사정에 따라 가입해 있는 보험), 3) 변호사회 산출방법, 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①지바이세키 보험(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치료기간 중의 치료비 등의 보상은, 120만엔이 상한입니다. 그 외에 후유장애가 파생한 경우는, 후유장애의 등급에 따른 보험금이 지불되어집니다.

지바이세키 보험의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삭감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기간 중의 보험금의 상한이 120만엔 인 점에서, 대부분이 치료비로 쓰여지고, 휴업보상이나 위자료가 조금 밖에 남지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에도, 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이 지불되어 집니다.

②임의보험

가해자가 가입해 있는 보험에 따라서 상한이 있습니다.

③변호사회의 산출방법

일본변호사회가 민사소송 할 때 산정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3) 과실배상에 대해서

교통사고발생의 책임이, 가해자 측이 큰가, 피해자 측이 큰가를 판단하는 과실비율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과실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변화합니다.



(4) 가해자가 되면

교통사고는 다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된 경우에 관련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합니다.

- ① 임의보험에 가입해 둘 것.
- ② 면허증을 휴대하고 운전할 것.
- ③ 사고현장에서 절대로 도망치지 않을 것.

만약에,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우선 피해자의 구호를 행하고, 그리고나서 경찰에 연락하여, 현장을 확인해 받는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회피하면, 나중에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병문안을 가는 등, 성의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통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타인에게도 잘 알 수 있도록 현장도 작성 등을, 서둘러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공적의료보험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어디인가의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의 공적의료보험에는 크게 나누어서 회사나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건강보험」 과, 그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의 2종류가 있습니다.

4-1 의료비와 공적의료보험

(1) 의료비와 공적의료보험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전국 일률적으로, 정해진 의료비의 3 할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가게 되면, 의료비는 전부 자기부담이 되는 데다가,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청구하므로, 지불이 꽤 고액이 됩니다.

의료비가 3, 000엔의 경우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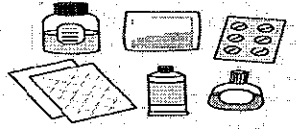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경우

【900엔】

의료비의 3할을 본인이 부담

【3, 000엔】

의료비는 전부 자기부담



(2) 보험대상 외의 치료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의료비의 자기부담은 든 의료비의 3 할로 가능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대상 외의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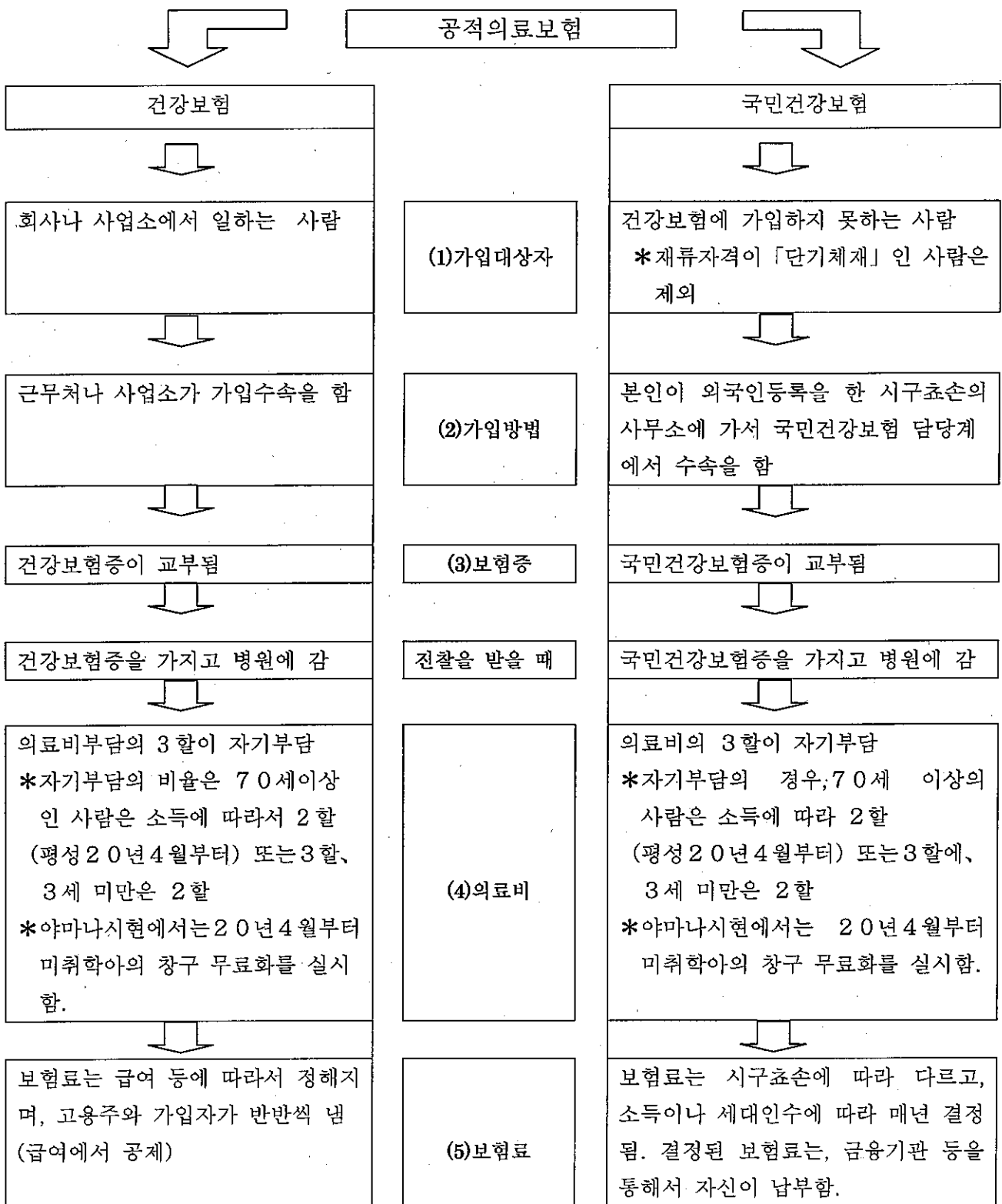
- 교통사고나 장애사건에 의한 부상
타인의 부주의나 불법행위에 의해 상처를 입은 경우는, 가해자가 그 의료비를 부담합니다.
단, 가입해 있는 보험에 신고함으로써, 보험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상적인 임신, 출산
- 병 이외의 이유로 인한 임신중절
- 건강진단, 정기정밀진단
- 예방접종
- 미용성형, 치과교정
- 통근 중이나 근무 중의 상처나 사고(노재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 개인실에 입원한 경우 등의 차액 병석대금
- 보험치료의 대상이 안 되는 검사, 수술, 치료, 약 등

(3) 민간의 의료보험

의료보험에는 생명보험회사 등이 판매하는 민간의 의료보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정의 금액을 내고, 병이나 상처 등으로 입원, 통원했을 때나 소정의 수술을 했을 때 등에 급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병원이나 의원에서의 의료비는 일시적으로 전액 자기부담이 됩니다.

일본의 공적의료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공적의료보험



(1)가입대상자

(2)가입방법

(3)보험증

진찰을 받을 때

(4)의료비

(5)보험료

*일본의 의료기관은, 보험이 적용되어지는 「보험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맛사지원, 미용성형 등) 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의료기관이어도, 보험대상외의 치료도 있습니다.

4-2 건강보험

(1) 가입대상자

회사나 사업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가입합니다.

(2) 가입수속

가입수속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사업소에서 행합니다. 근무처에 문의합니다.

(3) 보험증 (건강보험 피보험자증)

가입하면 「보험증」이 교부됩니다. 보험증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소중하게 취급합니다. 보험증에는 가입한 사람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 진찰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창구에 제시합니다. 일본국내를 여행할 때도 휴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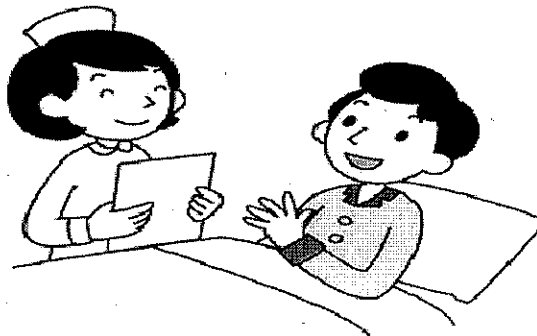
(4) 의료기관에 대한 부담액

병이나 상처로 의료를 받았을 때의 자기부담은 의료비의 3할입니다. 단, 70세 이상은 소득에 따라서, 자기부담이 2할 (평성20년4월부터) 또는, 3할 (평성18년 10월부터) 입니다. 또, 0세부터 2세의 영유아의 자기부담액은 2할입니다.

일부부담금

| | | |
|----------|------------------|------------------------------|
| 피
보험자 | 일반 | 의료비의 3할 |
| | 고령수급자 | 의료비의 2할 (일정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3할) |
| 피
부양자 | 3세 미만의 사람 | 의료비의 2할 |
| | 3세 이상 70세 미만의 사람 | 의료비의 3할 |
| | 고령수급자 | 의료비의 2할 (일정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3할) |

출전 : 도쿄사회보험사무국 「평성18년도판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후생연금보험의 개요」



(5) 보험료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그 금액이 급여 등에 따라 정해져, 고용주측과 가입자가 반반씩 지불합니다.

(6) 건강보험의 급부 종류와 내용

| 구분 | 급부의 종류 | |
|--------------------|-------------------------------|-----------------|
| | 피보험자 | 피부양자 |
| 병이나 다쳤을 때 | | |
| 피보험자증으로 치료를 받을 때 | · 요양의 급부
· 입원시 식사요양비 | · 가족요양비 |
| 의료비를 미리 대신 지불했을 때 | · 요양비 | |
| 의료비를 일정액 이상 부담했을 때 | · 고액요양비 | |
| 긴급시 등에 이송되었을 때 | · 이송비 | · 가족이송비 |
| 요양으로 회사 등을 쉬었을 때 | · 부상병 수당금 | |
| 출산했을 때 | · 출산육아 일시금
35만엔
· 출산수당금 | · 출산육아 일시금 35만엔 |
| 사망했을 때 | · 이장금 | · 가족 이장료 |

출전 : 도료사회보험사무국 「평성18년도판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후생연금보험의 개요」

*출산육아 일시금, 가족출산 일시금

피보험자가 출산했을 때에는 출산육아 일시금이, 피부양자인 가족이 출산했을 때에는 가족 출산 일시금이, 한 아이 당 35만엔이 지급됩니다.

4-3 국민건강보험

(1) 가입대상자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사람이 가입합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을하고, 1년 이상의 재류자격이 있으면서,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자격이 「단기체재」인 사람은 제외). 또한, 입국당초의 재류기간이 1년 미만이었어도, 그 후, 1년 이상 체재를 인정받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단, 미일사회보장협정 등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2) 가입수속

가입수속은 외국인등록을 한 시청·초촌 사무소의 국민건강보험의 담당과에서 행합니다.

| | |
|------|---|
| 필요서류 | 외국인등록증명서 |
| | 재류기간이 1년미만인 사람은 1년이상 일본에 체재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학허가증, 재학증명서 등) |

(3) 보험증(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

가입하면 「보험증」이 교부되어집니다. 보험증은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소중하게 취급합니다. 보험증에 가입한 사람의 주소,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 진찰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창구에 제시합니다. 일본국내를 여행할 때도 휴대합니다. 보험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4) 의료기관에 대한 부담액

병이나 상처로 의료를 받을 때의 자기부담은 의료비의 3 할입니다. 단, 70 세이상은 소득에 따라서, 자기부담이 2 할인 사람과 3 할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3 세미만의 영유아의 자기부담은 2 할입니다. 야마나시현에서는 평성 20년 4월부터 미취학아의 창구 무료화를 실시합니다.

| | |
|-----------------|--|
| 3 세 미만의 사람 | 의료비의 2 할(야마나시현에서는 평성 20년 4월부터 미취학아의 창구무료화를 실시합니다.) |
| 3 세이상 70 세미만 사람 | 의료비의 3 할 |
| 70 세이상의 사람 | 의료비의 2 할(일정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3 할) |

출전 : 도료사회보험사무국 「평성 18년도판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후생연금보험의 개요」

(5) 보험료

보험료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자신이 납입합니다. 시청·초손 사무서에서 보내져오는 「납부서」를 금융기관이나 시청·초손 사무서에 지참해서 납입하는 방법과, 금융기관의 「구좌이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징수원이 수금하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의 금액은 시초손에 따라서 다르고, 소득이나 세대 인원 수 등에 따라서 매년 정해집니다.

단, 입국 1년째는 전년도의 일본에서의 수입이 없으므로, 최저한의 보험료가 매겨지고, 2년째부터 소득 등에 따라서 변동합니다. 또, 40 세 이상 65 세 미만의 사람은 양로보험분을 가산한 금액이 됩니다.

보험료는 체납하면, 피보험자증을 반환하고, 그 대신 피보험자 자격증명서가 교부되어, 교부된 기간 중은 의료비가 전액 자기부담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후에 요양비지불로 시초손의 사무소 또는 소속 조합에 청구).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납입합니다. 재해나 실업, 도산 등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청·초손 사무소의 국민건강보험 담당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6) 국민건강보험의 급부 종류와 내용

| 구분 | 급부의 종류 |
|--------------------|------------------|
| 병이나 다쳤을 때 | |
| 피보험자증으로 치료를 받을 때 | · 요양의 급부 |
| 의료비를 미리 대신 지불했을 때 | · 요양비 |
| 의료비를 일정액 이상 부담했을 때 | · 고액요양비 |
| 긴급시 등에 이송되었을 때 | · 이송비 |
| 출산했을 때 | · 출산육아 일시금 35 만엔 |
| 사망했을 때 | · 장례비 |

출전 : 도료사회보험사무국 「평성 18년도판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후생연금보험의 개요」

***출산육아 일시금, 가족출산 일시금**

피보험자가 출산했을 경우, 한 아이당 35 만엔의 출산육아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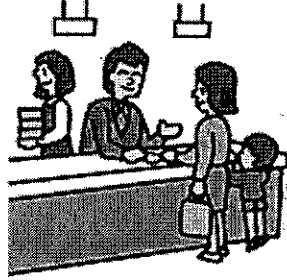
피보험자가 의료기관 등(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를 출산육아일시금 등의 수취대리인으로 신청함으로써, 의료기관 등이 피보험자 대신 출산육아일시금 등을 수취하는 것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의료기관 등의 창구에서의 출산비용이 경감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수취대리」라고 함.)

(7) 이럴 때는 신고를

국민건강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탈퇴되지 않습니다.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14 일 이내에 시청·초순 사무서의 국민건강보험의 담당과에 신고를 합니다. 보험증을 잃어버렸거나, 지저분해졌을 때, 아이가 태어났다, 세대주가 바뀌었다,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등은 14 일 이내에 신고해 주십시오. 전입·전출로 주소가 바뀌었을 때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출할 때는, 보험증을 지금까지 살고 있던 시청·초순 사무소에 지참해서

전출일을 신고하고, 이사한 뒤, 14 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일본을 출국할 때는 미리, 보험증과 인감(있는 사람만), 외국인등록증명서, 항공권 등을 가지고 신고합니다.



4-4 외국인 유학생 의료비 조성제도

「유학」의 재류자격을 지닌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유학생은, 의료비의 일부가 (독)일본학생지원기구(JASSO)로부터 보조됩니다. 의료비의 7 할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지불되어지고, 남은 3. 5할이 보조됨으로, 의료비의 실질 자기부담은 의료비 전체의 약 2 할이 됩니다.

(1) 보험의료기관의 창구에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을 제출하고, 진찰을 받습니다.



(2) 진찰 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조되지 않는 3 할의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불합니다.



(3) 「외국인유학생 의료비보조신청서」에 보험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영수증(유학생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보험진료인지 어떤지가 판별되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재학하는 대학 등의 유학생담당과에 제출합니다.



(4) 신청으로부터 3 개월 후에, 의료기관에 냈던 금액의 3. 5 할이 지불되어집니다.

자세한 것은, 학교의 유학생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5 고액의료비

의료기관에 내는 자기부담액이 고액으로, 일정 한도액을 넘는 경우, 「고액요양비 지급제도」가 적용됩니다.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창구(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시청·초손 사무서의 건강보험 담당, 건강보험(사회보험)의 경우는 회사 또는 사회보험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자세한 것은,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고액요양비제도는, 이하의 상한금액을 넘는 부분의 차액을 환불하게 됩니다.

| 조건 | 한 달 분의 상한 | 1년간에 해당월이 4회있는 사람의 4회째 이후의 상한 |
|--|-----------------------------------|-------------------------------|
| 생활보호의 피부험자와
시구초손민세 비과세 세대 등 | 35,400 엔 | 24,600 엔 |
| 표준보수 월액이 53 만엔 이상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건강보험)

연간소득이 600 만엔 초과세대
(국민건강보험) | 150,000 엔 + (의료비 - 50,000 엔) × 1% | 83,400 엔 |
| 일반(상기 2 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80,100 엔 + (의료비 - 267,000 엔) × 1% | 44,400 엔 |

※동일세대 내에서, 한 달의 자기부담액이 21,000 엔 이상인 사람이 2 인 이상 있는 경우는, 각각의 의료비를 합산해서 상기의 표에 적용시킵니다.

※70 세 미만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일정의 신청을 함으로써 병원창구에서의 비불을 고액요양비의 한도액까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을 통해서 문의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 시청·초손 사무서

*시초손 일람→<http://www.pref.yamanashi.jp/link/ctv/ctv.html>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 회사, 사회보험사무소

*사회보험사무소의 연락처

야마나시 사회보험사무국 055-231-8777 (대표)

〒400-8531 야마나시현코후시마루노우치 1-17-10 도부아나미즈빌딩 8층
(山梨県甲府市丸の内 1-17-10 東武穴水ビル 8F)

야마나시 사회보험사무국 오츠키사무소 0554-22-3811

〒401-8501 야마나시현오츠키시오츠키초하나사키 1602-1
(山梨県大月市大月町花咲 1602-1)

코후 사회보험 사무소 055-252-1431

〒400-8565 야마나시현코후시시오베 1-3-12
(山梨県甲府市塩部 1-3-12)

류오 사회보험 사무소 055-278-1100

〒400-0195 야마나시현카이시나토리 347-3
(山梨県甲斐市名取 347-3)

6. 노동자 재해보상보험 (노재보험)

일이나 통근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에 대한 나라의 보험제도(노재보험)이 있습니다. 일본의 회사는 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파트나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회사에서 일하면, 어떤 재류자격의 외국인이라도 적용됩니다. 일에 의해 다쳤거나 병에 걸린 경우에는, 우선 회사에 상담합니다. 일로 인한 상처와 병이라고 인정되면, 필요한 보험금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이나 통근에 의한 부상 등의 치료는, 다른 건강보험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수속을 해 주지않는 경우는, 노동기준감독원에 상담합니다. 노재보험은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재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회사가 아니고 노동기준감독원입니다. 노동재해라고 생각되면, 우선은 가까운 노동기준감독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6-1 「요양 (보상) 급부」 (일이나 통근에 의해 다쳤거나·병의 치료를 하는 경우)

될 수 있는 한 노재보험의 지정병원(종합병원·정형외과의 대부분)에 가도록 합니다. 노재보험의 지정병원에 「요양의 급부청구서」라고 하는 용지를 제출함으로써, 노재보험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노재보험의 지정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간 경우에는, 노동재해인 것을 알리고, 일단 자신이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나중에 「요양의 비용청구서」(노동기준감독소에서 받을 수 있음)을 노동기준감독소에 제출합니다.

6-2 「휴업 (보상) 급부」 (일이나 통근으로 다쳤거나·병의 요양 때문에 일할 수 없을 때)

「휴업 (보상) 급부 지급청구서」(노동기준 감독서에서 받습니다)라고 하는 용지를

노동기준감독소에 제출하면, 휴업 중에 못 받았던 급여의 보상(휴업(보상)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6-3 후유증이 남은 경우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을 통해서 문의해 주십시오.)

야마나시 노동국

코후시 마루노우치 1초메 1-11(甲府市丸の内1丁目1-11) 055-225-2856

코후 노동기준감독소

코후시 시모이이다 2초메 5-51(甲府市下飯田2丁目5-51) 055-224-5611

쓰루 노동기준감독소

쓰루시 오키카이치바 23-2(都留市四日市場23-2) 0554-43-2195

카지카자와 노동기준감독소

미나미코마군카지카자와초 655-50(南巨摩郡鵜沢町655-50) 0556-22-3181

7 연금

국민연금이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후나 장해, 사망과 같은 만일의 경우에,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국내에 거주하는 20~59세의 사람은, 외국인을 포함해서,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국민연금에 덧붙여서, 근무처에서 가입하는 후생연금, 공제조합의 제도도 있습니다.

7-1 가입하기 위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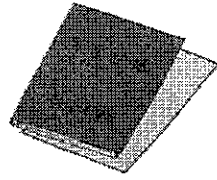
-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시청·초순 사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 근무처에서 후생연금,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신고의 필요가 없습니다.

7-2 보험료

-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납부서 대로, 우체국이나 은행의 창구 또는 편의점에서 납부해 주십시오. 구좌자동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근무처에서 후생연금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급여나 보너스에서 공제됩니다.

7-3 납입이 어려운 경우

- 수입이 없는 사람이나, 수입이 적어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에 의해 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학생은,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되어지는 「학생납부 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각종 학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7-4 연금의지급

국민연금, 노령이 되었을 때, 장애자가 되었을 때, 또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등에 지급됩니다. 연금에는 이하의 종류가 있습니다.

- 노령기초연금 · 장애기초연금 · 유족기초연금
- 미망인연금 · 사망일시금 · 노령복지연금

각각 지급의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7-5 귀국할 때

-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보험에는, 탈퇴일시금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 이것은, 외국인이 일본 체재 중에,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6 개월이상 납입한 경우, 귀국 후 2년 이내에, 소정의 수속에 따라 청구하면, 탈퇴일시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또한, 귀국한 후에,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살고 있는 시초손의 사무소에,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을 통해서 문의해 주십시오.)

*시초손 일람 → <http://www.pref.yamanashi.jp/link/ctv/ctv.html>



8 후생연금보험

- 회사, 공장, 상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가입하는 연금제도. 노동자의 노후생활의 보장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다치거나 병으로 일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의 생활이나,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 모든 법인의 사업소는, 반드시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는, 근무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회보험사무소에)

- 자영업, 농림수산업 종사자, 무직인 사람 등, 후생연금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문의는, 살고 있는 시초손의 사무소에)

*시초손 일람→<http://www.pref.yamanashi.jp/link/ctv/ctv.html>

<탈퇴일시금 지급제도>

- 후생연금보험 및 국민연금에는, 탈퇴일시금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 이것은, 외국인이 일본 체재 중에 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6 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 귀국 후 2년 이내에, 소정의 수속에 따라 청구하면, 탈퇴일시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귀국전에 「탈퇴일시금 청구서」를 사회보험사무소 등에서 입수하여 귀국 후, 그 청구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일본의 사회보험업무센터에 송부해서 수속해 주십시오.

문의처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을 통해서 문의해 주십시오.)

국민연금 : 시청 · 초손 사무소

후생연금 : 사회보험 사무소

*시초손 일람→<http://www.pref.yamanashi.jp/link/ctv/ctv.html>

*사회보험 사무소의 연락처

야마나시 사회보험사무국 055-231-8777 (대표)

〒400-8531 야마나시현 코후시 마루노우치 1-17-10 토우부아나미즈빌딩 8층
(山梨県甲府市丸の内 1-17-10 東武穴水ビル 8F)

야마나시 사회보험사무국 오츠키 사무소 0554-22-3811

〒401-8501 야마나시현 오츠키시 오츠키초 하나사키 1602-1
(山梨県大月市大月町花咲 1602-1)

코후 사회보험사무소 055-252-1431

〒400-8565 야마나시현 코후시 시오베 1-3-12
(山梨県甲府市塩部 1-3-12)

류오 사회보험사무소 055-278-1100

〒400-0195 야마나시현 카이시 나토리 347-3
(山梨県甲斐市名取 347-3)

<참고자료>

○ (재) 자치국제화협회

「다언어 생활정보」

<http://www.clair.or.jp/tagengo/index.html>

○야마나시현

「야마나시 의료넷트」

<http://www.yamanashi-iryo.net/>

○카나가와 국제교류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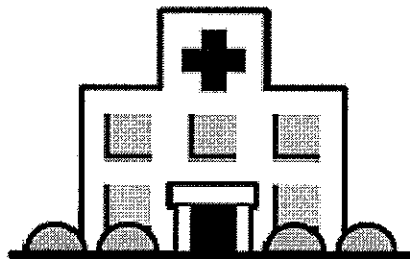
「다언어 의료문진표」

<http://www.k-i-a.or.jp/medical/index.html>

○AMD A 국제의료정보센터

「진찰 신청서」

<http://homepage3.nifty.com/amdact/PDF/jap/pdf-J-master.html>



「의료기관 진찰 핸드북」 2008년3월 발행

야마나시현 국제과

〒400-8501 코후시 마루노후치 6번지 1호

TEL 055-223-1436 FAX 055-223-1438

URL:http://www.pref.yamanashi.jp/global_net/index.jsp

URL:<http://www.pref.yamanashi.jp/barrier/html/kokusai/index.html>

